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정성문)

- 올림픽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20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
제2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“을 2018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